

제308회 임시회  
2012. 4. 25.(수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12. 4. 25.(수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양희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9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4월 18일

(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양희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00년 제정·운영되고 있는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」로 통·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
- 관광산업의 국제화와 전문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외국인 관광객 및 외국 자본 유치 증진을 통한 충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치 성공 보상금을 도입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조례의 제명
-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.
-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 성공 보상금제 도입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조례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변경하고,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,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,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증진을 위해 유치성공 보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#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”로 한다

제2조제5호 중 “외국인관광객”을 “외국인 관광객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

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3조로 하고, 제10조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관광안내소)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(이하 “관광안내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

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
2. 관광 홍보에 관한사항
3.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
4.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
5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- 6.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
- 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

제11조(외국인 관광객유치 성공 보상) ①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관광전세기”란 국내·국외여행사에서 <u>외국인관광객</u>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9조(대상업무)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(신설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관광전세기”란 국내·국외여행사에서 <u>외국인 관광객</u>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.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관광객유치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대상업무) 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충청북도관광안내소 설치·운영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(신설)	<p>제10조(관광안내소)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(이하 “관광안내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도지사가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·판매</li> <li>4. 관광홍보물 제작·배포</li> <li>5.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국내·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</li> <li>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</li> </ol>

<p>(신설)</p>	<p>제11조(외국인 관광객유치 성공 보상) ①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10조 (생략)</p>	<p>제13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 (생략)</p>	<p>제14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한다.</p>

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관광진흥법

제41조(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) ①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3조(업무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
2.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3. 관광 통계
4.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
5. 회원의 공제사업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7. 관광안내소의 운영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
제44조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(社團法人)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

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**제76조(재정지원)**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재정수반 요인

### ○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성공 보상(안 제11조)

본 조례안은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(안 제11조).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개정조례안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유치 성공 보상은 기업유치 보상을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.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상의 포상금제 현황을 보면

### ○ 외국인투자 기업유치

투자유치금액	지급기준율
①1,000만불 미만	투자유치금액의 0.1%
②1,000만불이상~5,000만불 미만	①+1,000만불 초과액의 0.05%
③5,000만불이상 ~ 1억불 미만	①+②+5,000만불 초과분의 0.01%
④1억불 이상	①+②+③+1억불 이상 초과분의 0.005%

○ 공무원

투자유치금액	지급기준율	상한액
50억~100억미만	투자금액의 0.01%	100만원
100억~500억미만	100만원+(투자금액-100억)×0.00005	300만원
500억~1,000억미만	300만원+(투자금액-500억)×0.00004	500만원
1,000억~3,000억미만	500만원+(투자금액-1,000억)×0.000025	1,000만원
3,000억~5,000억미만	1,000만원+(투자금액-3,000억)×0.00005	2,000만원
5,000억 이상	2,000만원+(투자금액-5,000억)×0.00002	3,000만원

이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국 관광기업·자본 유치 포상을 산출하며

○ 외국인투자 기업유치

투자유치금액	지급기준율
①1,000만불이상~5,000만불 미만	1,000만불 초과액의 0.05%
②5,000만불이상 ~ 1억불 미만	①+②+5,000만불 초과분의 0.01%
③1억불 이상	①+②+1억불 이상 초과분의 0.005%

○ 공무원

투자유치금액	지급기준율	상한액
100억~500억미만	100만원+(투자금액-100억)×0.00005	300만원
500억~1,000억미만	300만원+(투자금액-500억)×0.00004	500만원
1,000억~3,000억미만	500만원+(투자금액-1,000억)×0.000025	1,000만원
3,000억~5,000억미만	1,000만원+(투자금액-3,000억)×0.00005	2,000만원
5,000억 이상	2,000만원+(투자금액-5,000억)×0.00002	3,000만원

○ 공무원

관광객 유치금액	지급 산출액	상한액
30,000명	분기당	200만원
30,000명~50,000명미만	분기당	400만원
50,000명~100,000명미만	반기당	1,000만원
100,000명 이상	연 간	2,000만원

4. 부대의견

없 음.

5. 작성자

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보흠(220-5031)